

大衆交通サービス 保證制
推 進 狀 況 報 告



충청북도 交通政策課

1. 推進背景

□ 運輸従事者 遵守事項 不履行으로 乗客不便 招來

- 위법처리건수 : 1,171건(과징금 290백만원)
 - '98 불편신고 : 297건('97년 344건)
 - '98 단속건수 : 892건('97년 1,021건)
- 난폭운전 등 불법운행으로 교통사고 증가
 - '98 교통사고발생건수 : 11,215건(전국의 4.6%)
 - ※ 사망 701명, 부상 16,263명, 물적피해 319억원
- 교통문화지수 전국의 최하위
 - 조사항목 : 운전형태지표, 교통안전지표, 교통환경지표
 - 조사결과 : 1위 창원, 2위 서울, 3위 제주
 - ※ 청주시는 13개 도시중 13위

□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 改正으로 運輸従事者 罰則 強化 ('98. 8. 23 시행)

- 1년에 3회위반시 자격취소
 - ① 승차거부 중도하차 ② 부당요금 징수(미터기 미사용)
 - ③ 호객행위 ④ 승객을 합승하는 행위
- 1년내 2회위반시 자격정지 20일(개인택시 면허 탈락)
- 1년내 1회위반시 과태료 20만원 부과
- 아래 행위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부과
 - 지정된 제복 미착용, 여객이 타고 있을 때 흡연
 - 버스가 임의 결행, 거스름돈 미지불 행위 등

2. 法的根據
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9항
 - 도지사는 안전운송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(개선명령)를 할 수 있다.
- 같은법 제22조(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)
 - 도지사는 운송질서확립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명령 가능

3. 推 進 狀 況

- 기본계획수립 : '98. 9. 27
- 열린교통정책협의회 의견수렴 : '98. 10. 16
 - ※ 반 응 : 사업자, 종사자는 부담을 느끼고 있으나 일반주민은 환영하는 편임
- 운수관련단체 및 관계자 회의개최 추진계획 시달 : '98. 11. 18
- 대상차량 조사 확정 40개업체 4,216대 : '98. 12. 11
- '99 주요업무계획 도의회 보고 : '99. 1. 21
- 서비스 보증제 안내문 10,000매 부착 : '98. 2. 1~2. 14
- 청주개인택시 지부장 회의 도관계자 참석 토의 : '99. 2. 25
 - 토의결과 : 대중교통서비스 보증제 시행에 참여기로 결정
 - ※ 서비스 보증제로 처리된 사안이 교통불편엽서로 다시 신고되어 이중처벌 받지 않도록 건의(이중처벌 하지 않을 것을 회신)

- 현금비치 보증제 시행 : '99. 3. 2
- '99. 3. 10현재 40개업체 4,216대중 86.5%인 3,647대가 참여 (시외, 시내, 법인택시 100%, 개인택시 70%)
 - ※ 개인택시 1,890대중 1,321대 참여(70%)
- 관광건설위원회 업무보고 : '99. 3. 11
 - 주민에 대한 홍보부족이므로 홍보를 강화 시행
- 개인택시 2지부 주관 서비스 보증제 시행반대 집회개최 : '99. 3. 12
 - 상당공원에서 약 320명 참여 철회결의 및 가두시외
 - 집회대표자 도청방문 건설교통국장과 면담
 - 서비스 보증제 시행 위반차량 단속 연기
 - 3월 16일 ⇒ 3월 22일로
 - 연기 기간동안 제도시행을 위해 재협의 할 것을 약속⇒집회해산
- 19개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: '99. 3. 16
 - 좋은 시책이고 불법행위 억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행방법상 실효성이 다소 의문이 되므로 현금을 전화카드 등으로 대체 하여 시행
- 개인택시 제2지부 대표와 대화 : '99. 3. 16
 - 시책 자체는 좋으나 시행방법상 현금이나 물질적인 것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므로 철회 요구
 - 상호 의견차가 크므로 지사님 면담 요구하고 미시행 차량 390대에 대해 지사 면담후로 단속연기

- 개인택시 제2지부 대표와 지사 면담 : '99. 3. 23
 - 인권유린이다. 이중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등 부당한 시책이라며 철회요구

- 개인택시 제2지부 대표와 교통정책과장 면담 : '99. 3. 25
 - 서비스 보증제의 기존틀을 유지하되 현금대신 보증엽서로 대체 요구
 - 1년간 평가 후 불성실한 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
 - ※ 보증엽서제란 조합별 운수단체별로 일정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운수종사자가 위법행위를 했을 때에는 승객이 카드에 위법행위를 표시해 우체통에 넣으면 시군에서 해당 조합별로 과태료를 징수, 과징금 과목에 불입하여 교통시설비로 사용

- 운수대표자 노조대표, 교통전문가와 토론회 개최 : '99. 3. 26
 - 현금사용은 문제가 있으므로 쿠폰이나 우체국 우편환 등으로 대체 사용
 - 이중처벌 문제가 있는 교통불편신고 엽서제를 회수
 - 개인택시 법인택시 일부에서도 철회를 요구

- 대중교통서비스 보증제를 잠정 유보하고 새로운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 : '99. 3. 29

- 개선방안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
 - 26개 시민단체에 개선방안을 4. 10까지 제출하도록 공문발송 : '99.3. 30
 - 4개 운수단체에도 개선방안을 4. 10까지 제출하도록 공문발송
 - 대중교통을 실제 이용하는 시민 20명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서면 요구 : '99. 4. 2

4. 提示된 問題點

- 현금사용은 도난, 분실의 우려와 관리상의 애로 발생
- 이중처벌의 가능성과 안전사고위험, 인권유린 등의 문제 발생소지 내포
- 특정사안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승객과 운전자간 다툼발생의 소지가 있음

5. 改善 要求意見

- 서비스 보증제를 계속 시행하되 현금을 보증엽서로 교체
⇒ 개인택시 제2지부
- 서비스 보증제를 계속 시행하되 현금대신 전화카드로 교체 사용
- 시내·시외버스
- 서비스 보증제는 좋은 제도다. 그러나 이중처벌 문제가 있으므로 교통불편신고엽서나 보증제중 하나만 시행
⇒ 청주택시 정순홍

6. 앞으로의 對策

시민단체, 운수업체, 대중교통이용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토의를 거쳐 거기에서 집약된 안을 참작하여 4월말 안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임.

※ 個人택시支部別 大衆交通서비스 保證制 參與實績

('99. 3. 10현재)

지 부 명	참여대상차량	참여차량	참여비율(%)	비 고
합 계	1,890	1,321	70	
제 1 지 부	59	59	100	
제 2 지 부	620	200	32	
제 3 지 부	258	219	85	
제 5 지 부	203	163	80	
제 6 지 부	190	185	97	
제 7 지 부	159	137	86	
제 8 지 부	252	212	84	
제 9 지 부	114	111	97	
비지부원	35	35	100	

※ 총 참여 대상차량 4,216대중 86.5%인 3,647대 참여